####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과 제37조제1항,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김치·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볶은 것을 제외한 커피와 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위해 '23년말까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단순가공식료품의단서조항이 삭제된 별표 1의2를 따르고,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별표 2의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2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제3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시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 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 곡류	1001 1002	① 밀과 메슬린(meslin) ② 호밀
	1003	③ 보리
	1004	④ 귀리
	1005	<ul><li>⑤ 옥수수</li><li>② **(*) = *** ** ** ** ** ** ** ** ** ** ** **</li></ul>
	1006 1007	⑥ 쌀(벼를 포함한다)         ⑦ 수수
	1007	⑧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
	1101 1102	y seed)와 그 밖의 곡물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1103	루는 제외한다] ①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
	1104	t) ②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
		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1106	부순 것 ①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
		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칡뿌리·살렙(salep)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
		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
	1106	h)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0701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1105	한다)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
	0001	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류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0902 0904	웨이스트(waste)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
		menta)속의 열매

	1201 1202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
		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1206 1207	상관없다)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
		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
		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
	1208	수었는지는 상관없다]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1212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
		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
	1211	수었는지에 상관없다)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1801	인삼류 ①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
	1802	정한다) ②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2401 0910	웨이스트(waste) ③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④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4. 과실류	0801	생강 ①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

	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
0802	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0803	상관없다)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
0804	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④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
	(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
	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0805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0806 0807	로 한정한다)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
	[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
0808	다) ⑧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0809	으로 한정한다) ⑨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
	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0810 0811	것으로 한정한다)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한정한다)  (1)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1)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2	①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③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 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 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합 정한다)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한정한다)  (1)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5) 채소류 (1)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0813 ③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 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 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합 정한다)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합 정한다)		0813	한정한다) ③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
물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정한다)			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관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정한다)			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
정한다)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0703 @ 84 · 94 · 12 · 12 (leek) 4 4 4		0703	정한다)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
로 한정한다) 0704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		0704	로 한정한다)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ㅂ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
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0705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다)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0706	다)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
	0707	한 것으로 한정한다)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0708	정한다)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
		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0709	한다)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710 0711	으로 한정한다) ③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0712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①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
	0713	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c	0101	것인지에 상관없다) ② 미(건조리 스 이리 미 비사 이 미 이 제 이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
	0102 0103 0104 0105	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③ 돼지 ④ 면양과 산양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7. 수육류	0201	것으로 한정한다)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0202 0203	정한다)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0204	것으로 한정한다)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
	0205	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0206	ブ,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⑥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
		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
	0207	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層肉)(신선한 것, 냉장하거
	0208	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0209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
		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
		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0210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⑩ 육과 식용 설육(層肉)(염장하거나 염수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정한다), 육이나 설육(層肉)의 식용 고운 가
0504	루 및 거친 가루 ①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0511	한다) ①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0506	다) ①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
	(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0401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
0101	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조
0402	·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0407	농축유・연유와 분유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
	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0408	다)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
	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
	0511 0506 0401 0402 0407

	1901	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3502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생선류	0301 0302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
		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
	0303	은 제외한다]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
		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
	0304	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
	0305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
		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
		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
		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
		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

		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
	0307	함한다)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0308	것을 포함한다)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
		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0309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⑨ 어류・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0511	것으로 한정한다)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
10 11 2	0007	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
		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11. 해조류	1212	것으로 한정한다)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

		·미역·톳·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
		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
		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0409 0410	① 천연꿀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
식용으로		품
제공되는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산물, 축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
산물, 수산		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
물 또는 임	0=04	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산물과 단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순가공 식		소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
료품		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
	1209	고추장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
		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
		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
		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
		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신・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 범위) ① 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 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단서 신설> -----. 다만, 2023년 1 2월 31일까지 공급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의2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 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 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 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 류표에 따른다. <단서 신설> -----. 다만, 2023년 12 월 31일까지 수입시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하지 않는 다.